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제 3405호
2017. 4. 17.(월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7-93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2
---	---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930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4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등에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로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신설(안 제35조의2제1항)

나.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(안 제35조의2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<참조: 건축기획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우편번호 100-744>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(전화 02-2133-7101, FAX: 02-2133-0750 E-mail: ks7175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